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9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은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.
- 라. 제2호다목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은 1천만원을 넘지 못한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2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판정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 제3항	250	350	500
나. 법 제24조의2에 따른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59조 제2항제1호	500	700	1,000
다.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. 다만,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「농	법 제59조 제2항제3호	해당 물품의 판매장소 및 양도장소에 서 원산지 표	해당 물품의 판매장소 및 양도장소에 서 원산지 표	1,000

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정한 과태료를 적용한다.	시를 하지 않고 유통시킨 물량(판매를 위한 창고 저장 물량과 이미 판매된 물량 중 확인 가능한 물량을 포함한다)에 현지의 실제거래가격을 곱한 금액이나 500만원 중 많은 금액	시를 하지 않고 유통시킨 물량(판매를 위한 창고 저장 물량과 이미 판매된 물량 중 확인 가능한 물량을 포함한다)에 현지의 실제거래가격을 곱한 금액이나 700만원 중 많은 금액		
라.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 제1항제1호	1,000	1,500	2,000
마.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59조 제1항제2호	1,000	1,500	2,000
바.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59조 제1항제3호	1,000	1,500	2,000
사.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59조 제1항제4호	1,000	1,500	2,000
아. 법 제49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 제2항제4호	500	700	1,000